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88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시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 동의자 포함(구자근의원안)	2

I. 개요

1.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88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13.

(3) 회 부 일 : 2025. 3.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을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12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시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 동의자 포함(구자근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제100조의12) ○ 목적: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 ○ 대상: <u>신청자</u> 및 그 밖의 가구원 ○ 내용: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요청	☐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시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 동의자 포함 ○ (현행과 같음) ○ 대상: <u>신청자(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을 포함)</u> 및 그 밖의 가구원 ○ (현행과 같음) ☐ 부 칙 ○ 시행일: 공포한 날

* 구자근의원안 2025. 3. 13. 발의(의안번호 8889)

☐ 현행법은 국세청장이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그 가족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청자”의 범위에 직접 신청한 사람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직권 신청에 동의¹⁾한 사람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이면 국세청이 금융정보를 조회할 때 해당 대상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은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²⁾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임.

근로장려세제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나 있고 사회보험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안전망 체계를 완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비교]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
목적	노인·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근로능력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보장	근로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해소	일정소득이 있는 국민을 노령·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내용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생계유지 부족 소득을 보충적으로 지원	일한 만큼 추가지원이 이루어지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사회보험원리에 따라 본인이 보험료 일정 부담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23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고, 최초의 근로장려금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2009년에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되었으며, 현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고 있음.³⁾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기준]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지급
가족가구	홀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급

□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4조 6,035억원, 2022년 4조 5,036억원이고, 2024년에는 4조 7,281억원, 2025년에는 4조 8,520억원으로 전망되어 증가추세에 있음.

[근로장려금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전망)	2025(전망)
조세지출규모	46,035	45,036	47,281	47,120	48,520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⁴⁾ 근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삭제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로장려세제 정책목표인 저소득 가구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가구단위로 적용하고 있음.⁵⁾

또한, 근로장려금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2항⁶⁾에서는 신청자 및 그 밖의 가구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은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3. 삭제

4.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홀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5)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영국 등도 가구단위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그 밖의 가구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1항7)에서는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을 비롯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 누구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바, 신청 누락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⁸⁾

[최근 5년간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가구, 백만원)

구분 (귀속)	일반신청		직권신청		합 계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2019	4,318,967	4,468,265	-	-	4,318,967	4,468,265
2020	4,261,678	4,473,228	-	-	4,261,678	4,473,228
2021	4,416,326	4,487,141	-	-	4,416,326	4,487,141
2022	4,262,651	4,725,426	-	-	4,262,651	4,725,426
2023	3,890,644	4,269,472	320,236	398,014	4,210,880	4,667,486

주: 직권신청은 '23.3월부터 직권신청 동의를 받아 '23년 귀속분부터 적용

자료: 국세청

□ 이에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⁹⁾ 또는 경정¹⁰⁾을 위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은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8)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전자신청 및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의 신청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종전의 자동응답시스템(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인터넷) 외에 전화 신청대행 등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는데 새로운 비대면 신청방법인 '전화 신청대행'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직권신청 근거를 도입하였음. 전화 신청대행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거주자가 전국 7개 지방청(서울·충북·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청)에 설치된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해당 거주자의 동의(구두)를 받아 대신 신청해주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9) 「조세특례제한법」

하여 금융기관의 장애인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첫째, 직권 신청 동의자를 국세청의 금융자료 조회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고 지급누락을 줄여 근로장려금 지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금융자료에 대한 조회¹¹⁾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직권 신청 동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반기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총급여액 등에 따라 법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제3호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 방법 또는 그 밖에 재산상황·소비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한다.

1. 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 등(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 등
3.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

가 없어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2023년 귀속분 직권 신청 동의자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귀속)	직권신청 동의자	직권신청자 (A)	지급자 (B)	지급비율 (B/A)
2023년	666,513 ¹⁾	333,817 ²⁾	320,236	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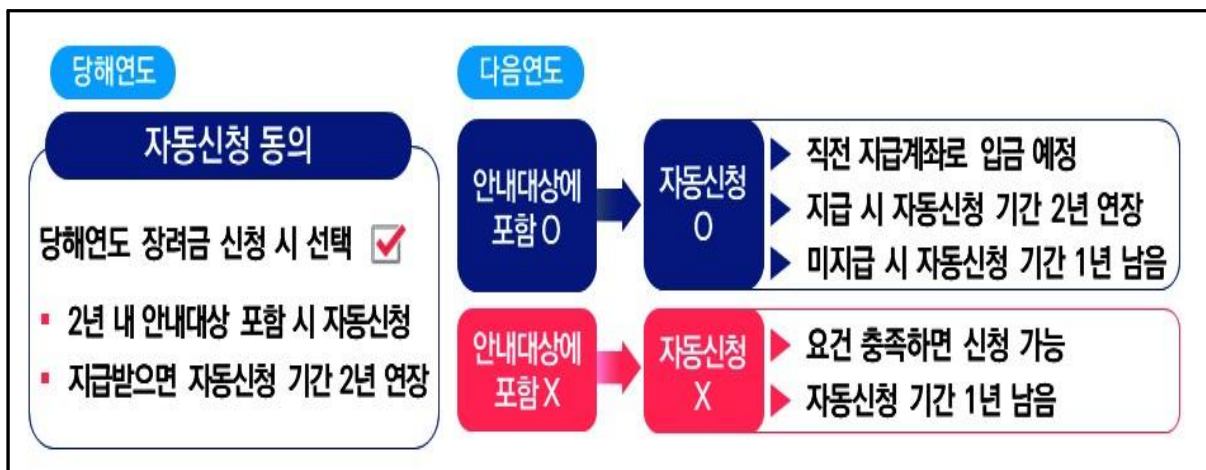
주1: '23.3월과·5월 신청 시 다음 해 직권신청에 대해 사전동의한 자

주2: 직권신청 동의자 중 '23년 귀속분에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직권신청한 자

자료: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직권 신청에 동의한 가구는 총 66만 6,513가구에 달하며, 이 중 국세청이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한 가구는 33만 3,817가구이나 이 가운데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32만 236가구로 나타났음.

[직권 신청 제도 현황]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이러한 차이는 직권 신청 동의자라 하더라도 다음 해에 신청요건 (금융자료 미포함)을 충족한 경우에만 국세청의 안내대상에 포함되

어 직권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금융자료를 수집하여 소득·재산(금융자료 포함)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즉, 금융자료를 포함한 종합적인 요건 심사 이후에야 지급 여부가 확정되므로, 직권신청 동의자 수와 실제 지급자 수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게 됨.

한편,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재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기준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반면, 한국은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 안내를 하더라도 지급 심사 단계에서는 재산 요건(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¹²⁾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 중 실제 지급이 가능한 대상자만 국세청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업무 효율성과 근로장려금 지급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둘째, 금융자료 조회를 통해 직권 신청 동의자 중 실제 지급가능한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 국세청은 불필요한 검토나 자료요청 절차를 줄이고 행정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는 직권 신청 동의자의 금융거래 자료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을 미리 제외할 수 있어, 지급대상자 선정과정이 간소화될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근로장려금 심사 및 결정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절감되므로 행정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근로장려금 지급이 종국적으로 직권 신청 동의자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과 금융정보 제공은 별개의 사안이고, 금융정보 제공은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명시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달리 직권 신청 동의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동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거주자가 동의(구두)한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금융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¹³⁾ 시 금융정보 제공의 목적, 범위, 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직권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대신하는 행정적 절차 대행이고 금융정보 제공은 신청자의 자격 확인을 위한 별도의 과정으로, 이는 직권 신청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에 동의한 것이지 금융정보 제공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¹⁴⁾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직권 신청 동의자에 대해 직권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가 되므로 현행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자료 제공 요구가 가능하게 되고, 현재도 직권 신청 후 신청자의 심사 과정에서 금융거래자료 제공 요구를 통해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또한, 국세청은 직권 신청 동의자는 국세청이 장려금을 신청해 주는 것에 대해 미리 동의한 자로서, 사실상 신청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직권 신청 동의자의 금융자료를 미리 수집할 수 있다면, 안내대상자 선정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다만,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매년 판정하기 때문에, 신청안내를 받아 직권 신청에 동의한 경우라도 다음 해에 직권 신청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권 신청 동의자 모두를 신청자로 보아 금융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47